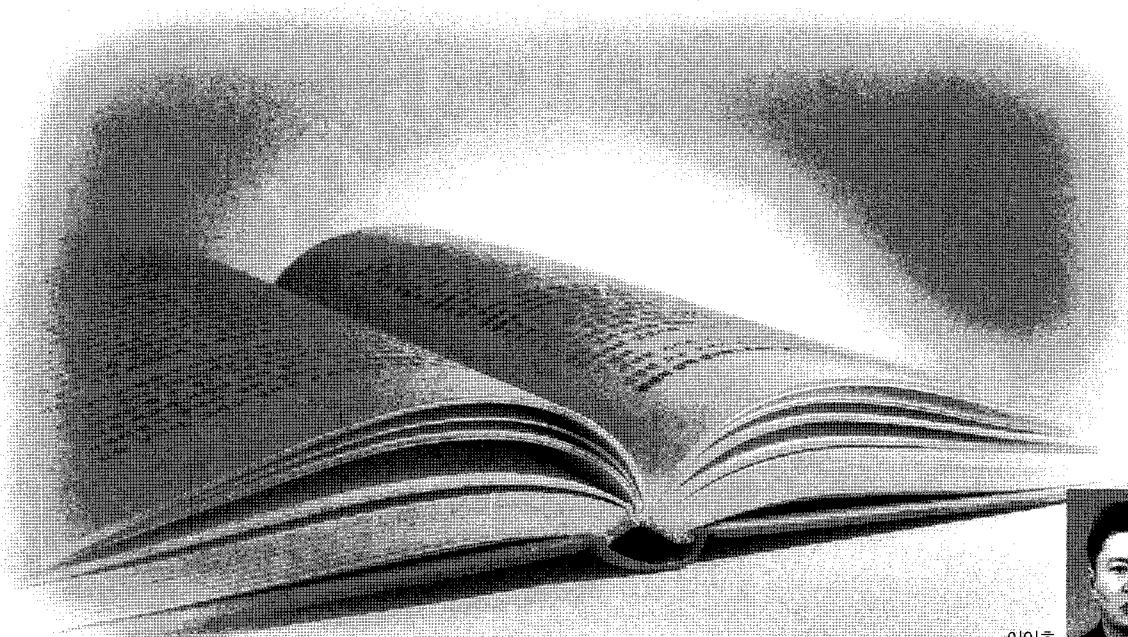


생균제, 성분등록 현실화 급선무



이인호
글로벌 네트워크

현행 사료관리법 13조의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 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없이 곧바로 농림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격의 설정이나 개정 및 폐지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전문가집단의 철저한 검토아래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에는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준 및 규격설정 절차에 대한 조치사항도 관리업계를 포함한 축산협조의 협

실과 다소 동떨어진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정도의 차이를 두고 편법허가 가능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규들을 현실에 맞게 시정하여 사료관리법의 권위를 원천적으로 회복하려는 후속조치에 대해 신속히 동참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 농림부 축산국이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자성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미 본인은 2004년 12월 호에서 “사료관리법 단미·보조 사료의 비현실적인 항목에 대한 재개정”이라는 특별 기고를 통해서 일부 항목부분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관련업계의 현실을 연계하여 현행의 사료관리법 문제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 차후의 개정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의 제정에 관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본인의 재개정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과학적인 재반론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장표현을 문제 삼거나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인이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 까지 일본의 도쿄(東京)와 신주꾸(信宿)출장을 통해 입수한 최신의 자료와 비사료검사소(肥飼料検査所) 담당자와 Fax와 전화를 통해 교환한 유권해석 내용을 중심으로 본 주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보완하여 제시함으로써 현행사료관리법의 일부 항목의 재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에게 관련업계의 여론과 요망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생균제(Probiotics)의 차후 개정 시에 고려할 사항』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되었던 생균제를 비롯한 사료첨가제가 사료

관리법에 의해 단미·보조사료로도 사용, 관리하는 것이 확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999년 5월 12일, 대한수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3회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사료 위생 및 안전성 확보방안”에서는 국내 사료관리법에서도 일본의 사료안전법과 같이 별도의 법을 신설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사료관리법에서 미진한 부분만 사료안전법의 일부 항목을 추가로 보완하여 규제 방향을 정하면 된다는 측의 주장이 나뉘어, 일부 감정대립으로까지 이어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을 본인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표1. 사료첨가물 일람

제1부 사료첨가물 일람	
제2부 제1부에 제시되는 사료첨가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1부 제1항 제1호	제2부 제1호
제1부 제2항 제1호	제2부 제2호
제1부 제3항 제1호	제2부 제3호
제1부 제4항 제1호	제2부 제4호
제1부 제5항 제1호	제2부 제5호
제1부 제6항 제1호	제2부 제6호
제1부 제7항 제1호	제2부 제7호
제1부 제8항 제1호	제2부 제8호
제1부 제9항 제1호	제2부 제9호
제1부 제10항 제1호	제2부 제10호
제1부 제11항 제1호	제2부 제11호
제1부 제12항 제1호	제2부 제12호
제1부 제13항 제1호	제2부 제13호
제1부 제14항 제1호	제2부 제14호
제1부 제15항 제1호	제2부 제15호
제1부 제16항 제1호	제2부 제16호
제1부 제17항 제1호	제2부 제17호
제1부 제18항 제1호	제2부 제18호
제1부 제19항 제1호	제2부 제19호
제1부 제20항 제1호	제2부 제20호
제1부 제21항 제1호	제2부 제21호
제1부 제22항 제1호	제2부 제22호
제1부 제23항 제1호	제2부 제23호
제1부 제24항 제1호	제2부 제24호
제1부 제25항 제1호	제2부 제25호
제1부 제26항 제1호	제2부 제26호
제1부 제27항 제1호	제2부 제27호
제1부 제28항 제1호	제2부 제28호
제1부 제29항 제1호	제2부 제29호
제1부 제30항 제1호	제2부 제30호
제1부 제31항 제1호	제2부 제31호
제1부 제32항 제1호	제2부 제32호
제1부 제33항 제1호	제2부 제33호
제1부 제34항 제1호	제2부 제34호
제1부 제35항 제1호	제2부 제35호
제1부 제36항 제1호	제2부 제36호
제1부 제37항 제1호	제2부 제37호
제1부 제38항 제1호	제2부 제38호
제1부 제39항 제1호	제2부 제39호
제1부 제40항 제1호	제2부 제40호
제1부 제41항 제1호	제2부 제41호
제1부 제42항 제1호	제2부 제42호
제1부 제43항 제1호	제2부 제43호
제1부 제44항 제1호	제2부 제44호
제1부 제45항 제1호	제2부 제45호
제1부 제46항 제1호	제2부 제46호
제1부 제47항 제1호	제2부 제47호
제1부 제48항 제1호	제2부 제48호
제1부 제49항 제1호	제2부 제49호
제1부 제50항 제1호	제2부 제50호
제1부 제51항 제1호	제2부 제51호
제1부 제52항 제1호	제2부 제52호
제1부 제53항 제1호	제2부 제53호
제1부 제54항 제1호	제2부 제54호
제1부 제55항 제1호	제2부 제55호
제1부 제56항 제1호	제2부 제56호
제1부 제57항 제1호	제2부 제57호
제1부 제58항 제1호	제2부 제58호
제1부 제59항 제1호	제2부 제59호
제1부 제60항 제1호	제2부 제60호
제1부 제61항 제1호	제2부 제61호
제1부 제62항 제1호	제2부 제62호
제1부 제63항 제1호	제2부 제63호
제1부 제64항 제1호	제2부 제64호
제1부 제65항 제1호	제2부 제65호
제1부 제66항 제1호	제2부 제66호
제1부 제67항 제1호	제2부 제67호
제1부 제68항 제1호	제2부 제68호
제1부 제69항 제1호	제2부 제69호
제1부 제70항 제1호	제2부 제70호
제1부 제71항 제1호	제2부 제71호
제1부 제72항 제1호	제2부 제72호
제1부 제73항 제1호	제2부 제73호
제1부 제74항 제1호	제2부 제74호
제1부 제75항 제1호	제2부 제75호
제1부 제76항 제1호	제2부 제76호
제1부 제77항 제1호	제2부 제77호
제1부 제78항 제1호	제2부 제78호
제1부 제79항 제1호	제2부 제79호
제1부 제80항 제1호	제2부 제80호
제1부 제81항 제1호	제2부 제81호
제1부 제82항 제1호	제2부 제82호
제1부 제83항 제1호	제2부 제83호
제1부 제84항 제1호	제2부 제84호
제1부 제85항 제1호	제2부 제85호
제1부 제86항 제1호	제2부 제86호
제1부 제87항 제1호	제2부 제87호
제1부 제88항 제1호	제2부 제88호
제1부 제89항 제1호	제2부 제89호
제1부 제90항 제1호	제2부 제90호
제1부 제91항 제1호	제2부 제91호
제1부 제92항 제1호	제2부 제92호
제1부 제93항 제1호	제2부 제93호
제1부 제94항 제1호	제2부 제94호
제1부 제95항 제1호	제2부 제95호
제1부 제96항 제1호	제2부 제96호
제1부 제97항 제1호	제2부 제97호
제1부 제98항 제1호	제2부 제98호
제1부 제99항 제1호	제2부 제99호
제1부 제100항 제1호	제2부 제100호
제1부 제101항 제1호	제2부 제101호
제1부 제102항 제1호	제2부 제102호
제1부 제103항 제1호	제2부 제103호
제1부 제104항 제1호	제2부 제104호
제1부 제105항 제1호	제2부 제105호
제1부 제106항 제1호	제2부 제106호
제1부 제107항 제1호	제2부 제107호
제1부 제108항 제1호	제2부 제108호
제1부 제109항 제1호	제2부 제109호
제1부 제110항 제1호	제2부 제110호
제1부 제111항 제1호	제2부 제111호
제1부 제112항 제1호	제2부 제112호
제1부 제113항 제1호	제2부 제113호
제1부 제114항 제1호	제2부 제114호
제1부 제115항 제1호	제2부 제115호
제1부 제116항 제1호	제2부 제116호
제1부 제117항 제1호	제2부 제117호
제1부 제118항 제1호	제2부 제118호
제1부 제119항 제1호	제2부 제119호
제1부 제120항 제1호	제2부 제120호
제1부 제121항 제1호	제2부 제121호
제1부 제122항 제1호	제2부 제122호
제1부 제123항 제1호	제2부 제123호
제1부 제124항 제1호	제2부 제124호
제1부 제125항 제1호	제2부 제125호
제1부 제126항 제1호	제2부 제126호
제1부 제127항 제1호	제2부 제127호
제1부 제128항 제1호	제2부 제128호
제1부 제129항 제1호	제2부 제129호
제1부 제130항 제1호	제2부 제130호
제1부 제131항 제1호	제2부 제131호
제1부 제132항 제1호	제2부 제132호
제1부 제133항 제1호	제2부 제133호
제1부 제134항 제1호	제2부 제134호
제1부 제135항 제1호	제2부 제135호
제1부 제136항 제1호	제2부 제136호
제1부 제137항 제1호	제2부 제137호
제1부 제138항 제1호	제2부 제138호
제1부 제139항 제1호	제2부 제139호
제1부 제140항 제1호	제2부 제140호
제1부 제141항 제1호	제2부 제141호
제1부 제142항 제1호	제2부 제142호
제1부 제143항 제1호	제2부 제143호
제1부 제144항 제1호	제2부 제144호
제1부 제145항 제1호	제2부 제145호
제1부 제146항 제1호	제2부 제146호
제1부 제147항 제1호	제2부 제147호
제1부 제148항 제1호	제2부 제148호
제1부 제149항 제1호	제2부 제149호
제1부 제150항 제1호	제2부 제150호
제1부 제151항 제1호	제2부 제151호
제1부 제152항 제1호	제2부 제152호
제1부 제153항 제1호	제2부 제153호
제1부 제154항 제1호	제2부 제154호
제1부 제155항 제1호	제2부 제155호
제1부 제156항 제1호	제2부 제156호
제1부 제157항 제1호	제2부 제157호
제1부 제158항 제1호	제2부 제158호
제1부 제159항 제1호	제2부 제159호
제1부 제160항 제1호	제2부 제160호
제1부 제161항 제1호	제2부 제161호
제1부 제162항 제1호	제2부 제162호
제1부 제163항 제1호	제2부 제163호
제1부 제164항 제1호	제2부 제164호
제1부 제165항 제1호	제2부 제165호
제1부 제166항 제1호	제2부 제166호
제1부 제167항 제1호	제2부 제167호
제1부 제168항 제1호	제2부 제168호
제1부 제169항 제1호	제2부 제169호
제1부 제170항 제1호	제2부 제170호
제1부 제171항 제1호	제2부 제171호
제1부 제172항 제1호	제2부 제172호
제1부 제173항 제1호	제2부 제173호
제1부 제174항 제1호	제2부 제174호
제1부 제175항 제1호	제2부 제175호
제1부 제176항 제1호	제2부 제176호
제1부 제177항 제1호	제2부 제177호
제1부 제178항 제1호	제2부 제178호
제1부 제179항 제1호	제2부 제179호
제1부 제180항 제1호	제2부 제180호
제1부 제181항 제1호	제2부 제181호
제1부 제182항 제1호	제2부 제182호
제1부 제183항 제1호	제2부 제183호
제1부 제184항 제1호	제2부 제184호
제1부 제185항 제1호	제2부 제185호
제1부 제186항 제1호	제2부 제186호
제1부 제187항 제1호	제2부 제187호
제1부 제188항 제1호	제2부 제188호
제1부 제189항 제1호	제2부 제189호
제1부 제190항 제1호	제2부 제190호
제1부 제191항 제1호	제2부 제191호
제1부 제192항 제1호	제2부 제192호
제1부 제193항 제1호	제2부 제193호
제1부 제194항 제1호	제2부 제194호
제1부 제195항 제1호	제2부 제195호
제1부 제196항 제1호	제2부 제196호
제1부 제197항 제1호	제2부 제197호
제1부 제198항 제1호	제2부 제198호
제1부 제199항 제1호	제2부 제199호
제1부 제200항 제1호	제2부 제200호
제1부 제201항 제1호	제2부 제201호
제1부 제202항 제1호	제2부 제202호
제1부 제203항 제1호	제2부 제203호
제1부 제204항 제1호	제2부 제204호
제1부 제205항 제1호	제2부 제205호
제1부 제206항 제1호	제2부 제206호
제1부 제207항 제1호	제2부 제207호
제1부 제208항 제1호	제2부 제208호
제1부 제209항 제1호	제2부 제209호
제1부 제210항 제1호	제2부 제210호
제1부 제211항 제1호	제2부 제211호
제1부 제212항 제1호	제2부 제212호
제1부 제213항 제1호	제2부 제213호
제1부 제214항 제1호	제2부 제214호
제1부 제215항 제1호	제2부 제215호
제1부 제216항 제1호	제2부 제216호
제1부 제217항 제1호	제2부 제217호
제1부 제218항 제1호	제2부 제218호
제1부 제219항 제1호	제2부 제219호
제1부 제220항 제1호	제2부 제220호
제1부 제221항 제1호	제2부 제221호
제1부 제222항 제1호	제2부 제222호
제1부 제223항 제1호	제2부 제223호
제1부 제224항 제1호	제2부 제224호
제1부 제225항 제1호	제2부 제225호
제1부 제226항 제1호	제2부 제226호
제1부 제227항 제1호	제2부 제227호
제1부 제228항 제1호	제2부 제228호
제1부 제229항 제1호	제2부 제229호
제1부 제230항 제1호	제2부 제230호
제1부 제231항 제1호	제2부 제231호
제1부 제232항 제1호	제2부 제232호
제1부 제233항 제1호	제2부 제233호
제1부 제234항 제1호	제2부 제234호
제1부 제235항 제1호	제2부 제235호
제1부 제236항 제1호	제2부 제236호
제1부 제237항 제1호	제2부 제237호
제1부 제238항 제1호	제2부 제238호
제1부 제239항 제1호	제2부 제239호
제1부 제240항 제1호	제2부 제240호
제1부 제241항 제1호	제2부 제241호
제1부 제242항 제1호	제2부 제242호
제1부 제243항 제1호	제2부 제243호
제1부 제244항 제1호	제2부 제244호
제1부 제245항 제1호	제2부 제245호
제1부 제246항 제1호	제2부 제246호
제1부 제247항 제1호	제2부 제247호
제1부 제248항 제1호	제2부 제248호
제1부 제249항 제1호	제2부 제249호
제1부 제250항 제1호	제2부 제250호
제1부 제251항 제1호	제2부 제251호
제1부 제252항 제1호	제2부 제252호
제1부 제253항 제1호	제2부 제253호
제1부 제254항 제1호	제2부 제254호
제1부 제255항 제1호	제2부 제255호
제1부 제256항 제1호	제2부 제256호
제1부 제257항 제1호	제2부 제257호
제1부 제258항 제1호	제2부 제258호
제1부 제259항 제1호	제2부 제259호
제1부 제260항 제1호	제2부 제260호
제1부 제261항 제1호	제2부 제261호
제1부 제262항 제1호	제2부 제262호
제1부 제263항 제1호	제2부 제263호
제1부 제264항 제1호	제2부 제264호
제1부 제265항 제1호	제2부 제265호
제1부 제266항 제1호	제2부 제266호
제1부 제267항 제1호	제2부 제267호
제1부 제268항 제1호	제2부 제268호
제1부 제269항 제1호	제2부 제269호
제1부 제270항 제1호	제2부 제270호
제1부 제271항 제1호	제2부 제271호
제1부 제272항 제1호	제2부 제272호
제1부 제273항 제1호	제2부 제273호
제1부 제274항 제1호	제2부 제274호
제1부 제275항 제1호	제2부 제275호
제1부 제276항 제1호	제2부 제276호
제1부 제277항 제1호	제2부 제277호
제1부 제278항 제1호	제2부 제278호
제1부 제279항 제1호	제2부 제279호
제1부 제280항 제1호	제2부 제280호
제1부 제281항 제1호	제2부 제281호
제1부 제282항 제1호	제2부 제282호
제1부 제283항 제1호	제2부 제283호
제1부 제284항 제1호	제2부 제284호
제1부 제285항 제1호	제2부 제285호
제1부 제286항 제1호	제2부 제286호
제1부 제287항 제1호	제2부 제287호
제1부 제288항 제1호	제2부 제288호
제1부 제289항 제1호	제2부 제289호
제1부 제290항 제1호	제2부 제290호
제1부 제291항 제1호	제2부 제291호
제1부 제292항 제1호	제2부 제292호
제1부 제293항 제1호	제2부 제293호
제1부 제294항 제1호	제2부 제294호
제1부 제295항 제1호	제2부 제295호
제1부 제296항 제1호	제2부 제296호
제1부 제297항 제1호	제2부 제297호
제1부 제298항 제1호	제2부 제298호
제1부 제299항 제1호	제2부 제299호
제1부 제300항 제1호	제2부 제300호
제1부 제301항 제1호	제2부 제301호
제1부 제302항 제1호	제2부 제302호
제1부 제303항 제1호	제2부 제303호
제1부 제304항 제1호	제2부 제304호
제1부 제305항 제1호	제2부 제305호
제1부 제306항 제1호	제2부 제306호
제1부 제307항 제1호	제2부 제307호
제1부 제308항 제1호	제2부 제308호
제1부 제309항 제1호	제2부 제309호
제1부 제310항 제1호	제2부 제310호
제1부 제311항 제1호	제2부 제311호
제1부 제312항 제1호	제2부 제312호
제1부 제313항 제1호	제2부 제313호
제1부 제314항 제1호	제2부 제314호
제1부 제315항 제1호	제2부 제315호
제1부 제316항 제1호	제2부 제316호
제1부 제317항 제1호	제2부 제317호
제1부 제318항 제1호	제2부 제318호
제1부 제319항 제1호	제2부 제319호
제1부 제320항 제1호	제2부 제320호
제1부 제321항 제1호	제2부 제321호
제1부 제322항 제1호	제2부 제322호
제1부 제323항 제1호	제2부 제323호
제1부 제324항 제1호	제2부 제324호
제1부 제325항 제1호	제2부 제325호
제1부 제326항 제1호	제2부 제326호
제1부 제327항 제1호	제2부 제327호
제1부 제328항 제1호	제2부 제328호
제1부 제329항 제1호	제2부 제329호
제1부 제330항 제1호	제2부 제330호
제1부 제331항 제1호	제2부 제331호
제1부 제332항 제1호	제2부 제332호
제1부 제333항 제1호	제2부 제333호
제1부 제334항 제1호	제2부 제334호
제1부 제335항 제1호	제2부 제335호
제1부 제336항 제1호	제2부 제336호
제1부 제337항 제1호	제2부 제337호
제1부 제338항 제1호	제2부 제338호
제1부 제339항 제1호	제2부 제339호
제1부 제340항 제1호	제2부 제340호
제1부 제341항 제1호	제2부 제341호
제1부 제342항 제1호	제2부

色素 (3種)	鉄マンガン、リン酸一水素カリウム(乾燥)、リン酸二水素ナトリウム(乾燥)、リン酸二水素ナトリウム(結晶)
	アステキサンチン、beta-アボ-8' -カルボン酸エチルエスティル、カントキサンチン
飼料が含有して いる効果成分の 有効な利用の促進 (52種)	アンブロリウム・エトバペート、アンブロリウム・エトバペート・スルファキノキサリン、クエン酸モランテル、デコキネート、ナイカルバジン、ハロフジン/ボリスチレンスホン酸カルシウム
抗生素質 (19種)	アミペバクトラシン、アピラマイシン、アルキルトリメチルアンモニウムカルシウムオキシテトラサイクリン、エフロトイシン、エンラマイシン、クロルヘトラサイクリン、サリノマイシンナトリウム、セデカマイシン、センデュラマイシンナトリウム、テストマイシンA、ナラシン、ノシヘブタイド、バージニアマイシン、ビコザマイシン、フラボフォスフオリボール、モネンシンナトリウム、ラサロドナトリウム、硫酸コリステン、リソチライシン
着色料 (1種)	着色料(エステル類、エーテル類、ケトン類、脂肪族高級アルコール類、脂肪族高級アルdehyd類、脂肪族高級炭化水素類、テルペン系炭化水素類、フェノールエーテル類、フェノール類、芳香族アルコール類、芳香族アルdehyd類及びラクトン類のうち、1種又は2種以上を有効成分として含有し、着者の目的で使用されるものをいう。)
显味料 (1種)	サッカリンナトリウム
酵素 (12種)	アミラーゼ、アルカリ性プロテアーゼ、キシラナーゼ、キシラナーゼ・ペクチナーゼ複合酵素、β-グルカナーゼ、酸性プロテアーゼ、セルラーゼ、セルラーゼ・プロテアーゼ・ペクチナーゼ複合酵素、中性プロテアーゼ、フィターゼ、ラクターゼ、リバーゼ
生薬剤 (11種)	エンテロコッカス・フェカリス、エンテロコッカス・フェシウム、クロストリジウム・ブチリカム、パチルス・コアグラヌス、パチルス・サブチルス、パチルス・セレウス、パチルス・ハイディス、ピフィドバクテリウム・サーモフィラム、ピフィドバクテリウム・シュードロンガム、ラクタバチルス・アンド・フィルス、ラクタバチルス・サリバリウス
その他 (2種)	グルコン酸ナトリウム、フルマ酸
(合計 153種)	
備考: ★…抗生物質剤 ★…特定添加物	
 飼料のトップへ	

현행 사료관리법은 일본의 『사료안전법』에 수록된 규정의 상당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일본의 배경과 국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서 반영하지 못한 채, 곁포장만 적용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써 국내 관련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토피아적 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공직자들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일본 사료안전법의 곁포장이 아닌, 관련업계의 민원수렴과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거쳐 국내 관련업계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법규로 다듬어 관련업계가 수긍하는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본인은 미국이나 EU가 아닌 일본의 사료안전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는 것

이 아니다. 문제는 보조사료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책임자가 관련업계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정부가 지정한 공인분석기관의 일반 조성분이 아닌 미생물이나 항생물질을 비롯한 특수 분석에 대해 관련업계의 인사들이 만족하거나 신뢰할만한 정도로 수준을 갖고 만들었어야 할 법을 외국의 관련법 규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한 점이다. 이미 그 부작용과 편법의 적용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은 관련업계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관련업계의 대다수가 계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다하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

른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편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업계에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집단의 검증과정을 과연 공개적으로 거쳤는지가 의문시되될 정도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규를 신속히 수정·보완하는 데 인색했던 법령제정자들과 협력자들의 책임 또한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상호협력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정보교류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 국가와 우리나라는 축산환경과 제도 그리고 공인분석기관의 분석수준에 있어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신

중히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사료안전법에 수록된 생균제 성분에다 효모제와 국균만을 기본으로 해서 국내법으로 확정하고, 미국의 AAFCO(2004)나 EU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생균의 목록조차도 미공정 규격 사료로 분류하는 국내 법규는 관련업계의 지지를 폭넓게 받는 올바른 법규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관련업계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의 생균제 법규에 찬성하고, 개정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공직자와 협력자 그리고 업계관련인사들은 왜 현행의 관련법규가 이상적인 법규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인을 비롯한 현행 생균제 관련법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정통성을 확립하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생균제를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서류 양식만을 갖추어서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허가증이 교부된다. 이러한 미숙한 체계를 일부 업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Bacillus polyfermenticus*(일명 비스루트균)균이나 *Bacillus lichenformis*균을 미공정규격 사료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 *Bacillus subtilis*균으로 편법허가등록하고 허위 분석자료까지 구비하는 사태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에 의해 살아있는 생균의 관리가 맡겨지는 허술한 체계를 갖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현행의 생균제 법규에 만족하는 인사들은 과학적인 실증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생균제로 사용되는 생균의 경우(본지

2004년 12월호 본인의 기고내용 참조) FDA의 CVM에서 GRAS로 관리할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일본도 (표1)에서 보듯이 사료첨가물이나 사료첨가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엄격한 규정을 거쳐야한다. 때문에 소수 회사 제품의 성분만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료첨가제로서 사료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EU에서도 약용식물추출물(Herb Extracts)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만 없다면 쉽게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나, 생균제의 경우에는 EU에서 거의 항생물질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20여개의 제품정도만이 EU의 승인을 정식으로 획득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복합생균제의 경우, 성분등록 시에 국내 사료관리법에 수록된 1-2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생균제 판매사의 팜플렛이나 리플렛에서 제시하는 성분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도 성분 등록을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처음부터 편법인 줄 알면서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 교묘히 법망을 피해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어 등록하여, 죄의식도 망각한 채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실사를 통한 정확한 사태파악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생균의 승인 범위 대폭 확대, 그외 규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대폭 강화해야

그러므로 현행 생균제 법규를 보다 현실화하여 편법을 최대한 방지하기위해서는 생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미국 FDA CVM에서 GRAS로 인정한 균, 일본의 사료안전법에 수록된 균, EU에서 인정하는 균 및 국내외적으로 특히 출현된 균을 기본적으로 생균제 승인성분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승인조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資料 4

飼料添加物の指定申請に必要な資料一覧

- 1 起源又は発見の経緯及び外国における許可状況、使用状況等
- 2 規格に関する事項
 - ①名称
 - ②化学構造
 - ③製造方法
 - ④生物学的、理化学的性状又は細菌学的性状
 - ⑤飼料中の定量法
 - ⑥経時的变化（安定性）
 - ⑦かび毒
- 3 効果に関する事項
 - ①効果を裏付ける基礎的試験
 - in vivo 試験
 - in vitro 試験
 - ②抗菌性飼料添加物との併用による影響に関する試験
 - ③効果を裏付ける野外応用による試験
- 4 残留性に関する試験
- 5 安全性に関する試験
 - ①菌の分類学的位置
 - ②毒性試験
 - ・一般毒性試験
 - ・特殊毒性試験
 - ・薬理学的試験
 - ・生体内運動に関する試験
 - ③対象家畜等を用いた飼育試験
 - ④耐性菌出現に関する試験
 - ⑤その他（自然環境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試験）

* * 飼料添加物の種類によっては、不必要的資料もある。

- 157 -

또한, 복합생균제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모두 등록시에 일어나는 특수한 생균 균주에 대해서는 공인분석기관의 분석기술 가능여부와 분석자 신뢰 수준을 비롯한 미비점을 전문가집단의 전문적 검토를 거친 후 관련업계와 공개적인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후 법규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재와 같은 편법등록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⑤

표2. 사료첨가물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일람

1.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허가사항, 사용사항 등

2. 규격에 관한 사항

- ①명칭 ②화학구조 ③제조방법
- ④생물학적, 이화학적 성상 또는 세균학적 성상
- ⑤사용중의 정량법 ⑥경시적 변화(안정적)
- ⑦곰팡이 독소

3. 효과에 관한 사항

①효과를 증명하는 기초적 실험

- in vivo 실험

- in vitro 실험

②항균성 사료첨가물과의 병용에 따른 영향에 관한 시험

③효과를 증명하는 야외 응용시험

4. 진류성에 관한 시험

5. 안전성에 관한 시험

- ①균의 분류학적 지위 ②독성시험

- 일반독성시험 • 특수독성시험

- 악리학적시험 • 임상실험(장기)

③대상가축 등을 사용한 사육시험

④내성균 출현에 관한 시험

⑤기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 사료첨가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자료도 있다.